

도-시·군 공공갈등 협력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

- 일 시 : 2016. 4. 19(화)
- 시 간 : 10:00 ~ 17:00
- 장 소 : 충남연구원 대회의실



충청남도
(도민협력새마을과)



충남연구원
ChungNam Insitute

목 차

□ 도-시·군 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 개요	3
□ 2016년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계획	11
□ 道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19
□ 특강자료 : 지자체 갈등관리와 갈등해결전략	29
□ 시·군 갈등현안 및 잠재갈등 현황	45

[참고자료]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61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8

도·시·군 공공갈등 협력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

- ◆ 도·시·군 및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공공갈등 현안문제 토론 및 상호 협력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 ◆ 도·시·군 간 갈등관리 협력체계 강화로 갈등 대응력 제고

1 워크숍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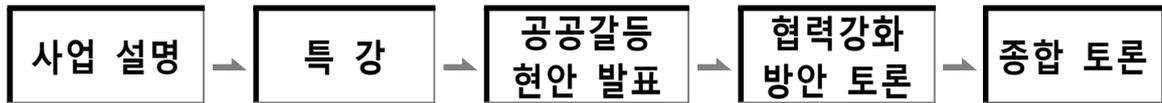
- 일 시 : 2016. 4. 19.(화) 10:00 ~ 17:00
- 장 소 :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충남 공주시 금홍동)
- 참 석 : 25명(도·시·군 갈등관리 업무관계관 등)
 - 충청남도 (5) : 도민협력새마을과장, 갈등관리팀장 및 팀원
 - 시·군 (15) : 팀장 및 담당자
 - 충남연구원 (5) : 분야별 전문가

2 주요내용

- 2016년 공공갈등 관리계획 설명(道 갈등관리팀)
- 道 갈등관리 전문기구 2016년 운영계획 설명(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
- 전문가 초청 특강
 - 강사명 : 서정철 위원장(국토교통부 시화호 관리위원회)
 - 주 제 : 지자체 갈등관리와 갈등해결 전략
- 시·군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시·군별 10분 내외)
 - 시·군 현안 발표 및 갈등 대응 성공·실패사례 공유로 시사점 도출
- 공공갈등 협력강화 방안 토론 및 의견 수렴
 - 도·시·군, 전문기관 협력강화 방안 논의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3 진행 계획

○ 진행 흐름



○ 세부진행계획

일 정		내 용	비 고
《제1부》 2016년 사업계획 설명 및 전문가 특강			
09:30 ~ 10:00	30'	◦ 등 록	
10:00 ~ 10:03	3'	◦ 개회 및 국민의례	갈등관리팀장
10:03 ~ 10:10	7'	◦ 참석자 소개	"
10:10 ~ 10:20	10'	◦ 인사말씀	도민협력새마을과장
10:20 ~ 10:30	10'	◦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계획 설명	갈등관리팀장
10:30 ~ 10:40	10'	◦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설명	장창석 연구원
10:40 ~ 12:00	80'	◦ 전문가 초청 특강	서정철 위원장
12:00 ~ 13:00	60'	◦ 점 심	송학가든
《제2부》 현안문제 토론 및 공공갈등 협력방안 모색			
13:00 ~ 14:40	100'	◦ 시·군 공공갈등 현안 발표 및 토론 - 1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 2조(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갈등관리팀장
14:40 ~ 15:00	20'	◦ 휴식	
15:00 ~ 15:50	50'	◦ 시·군 공공갈등 현안 발표 및 토론 - 3조(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갈등관리팀장
15:50 ~ 16:00	10'	◦ 휴식	
16:00 ~ 16:40	40'	◦ 공공갈등 협력강화 방안 토론 및 의견수렴 -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시·군 건의사항 등	도민협력새마을과장
16:40 ~ 17:00	20'	◦ 종합 토론 및 폐회	도민협력새마을과장

4 시군 참석자 명단

시군	부서	직위(직급)	성명	
천안시	자치협력과 (자치민원팀)	행정6	진중록	
공주시	시정담당관실 (시민소통새마을팀)	새마을팀장	강명구	
보령시	총무과 (시정팀)	행정7	박종식	
아산시	자치행정과 (행정팀)	행정8	임동윤	
서산시	자치행정과 (시정팀)	행정7	최영준	
논산시	자치행정과 (행정팀)	행정6	이영인	
계룡시	자치행정과 (새마을팀)	행정7	오주석	
당진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주민자치팀장	김진호	
금산군	자치행정과 (주민생활팀)	행정8	김미란	
부여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행정7	문대성	
서천군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	행정6급	한승교	
청양군	행정지원과 (행정팀)	행정팀장	김종용	
홍성군	행정지원과 (행정팀)	행정6급	황준용	
예산군	총무과 (행정팀)	행정팀장	임덕규	
태안군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사무6	오석근	



2016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계획

-도민협력새마을과 갈등관리팀장





2016. 4. 19(화)

2016년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계획



충청남도
(도민협력새마을과)

① 주요성과

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전국 9개 광역도 중 최초로 갈등관리 전담부서 신설, 체계적인 갈등관리 가능
- 도내 공공갈등 실행력 향상을 위한 갈등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② 공공갈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갈등예방 활동 강화

-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 사전조사 및 갈등관련 여론 모니터링 이행
- 갈등요인, 이해당사자, 주요 쟁점 정리 등 문제해결 대안 제시를 위한 갈등영향분석(4건) 실시

③ 공공갈등 조정을 통한 해결 활동 강화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재구성을 통한 전문인력 강화(15명→20명)
- 갈등사안에 따라 각각의 맞춤형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지원

② 아쉬운 점

① 공공갈등 관리대상의 갈등해결 성과 부재

-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한계 및 갈등 당사자의 표면적 이해관계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복합되어 갈등해결의 어려움 존재

② 공공갈등 관리인식 부족과 갈등 초기 대응 미흡

- 공공정책 계획수립 시 갈등인식 부족과 제도적 장치 부재로 갈등초기 실무부서(시·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갈등 확산

③ 공공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시스템의 실효성 저하

- 지역갈등을 중앙정부의 갈등관리시스템(매뉴얼)에 따라 해결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갈등해결에 실효성이 저하됨

II 2016년 공공갈등 관리계획

1 새로운 갈등관리 시책사업

① 공공갈등 사전 진단제 시행

□ 목 적

- 정책수립 단계부터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대응방안 강구
→ 갈등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 최소화 및 도민화합에 기여

□ 사전 진단제 개요

- 사전진단 대상사업
 - 신규 공공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변경계획 포함)
 - 다수의 도민이 이용자·수혜자인 공공정책
 -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으로 선호시설 및 비 선호시설에 대한 유치(인·허가 포함) 등
- 진단시기 : 주요정책의 사업계획 수립 시
 - 공공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결재 시
- 진단항목 : 정책개요, 갈등내용 등 4개 분야 17개 항목
- 진단방법 : 진단대상 사업계획 수립 시 “갈등관리보고서” 사용

추진 계획

(1 단계)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시범운영

- 시행시기 : 2016. 2월부터 시행

(2 단계)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확대 운영

- 시행시기 : 2016. 7월부터

※ 상반기 운영결과를 분석, 시행방안을 보완하여 확대 운영

② **갈등문화행사 개최**

□ 사업목적

- 갈등 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갈등에 대한 인식과 관심 고취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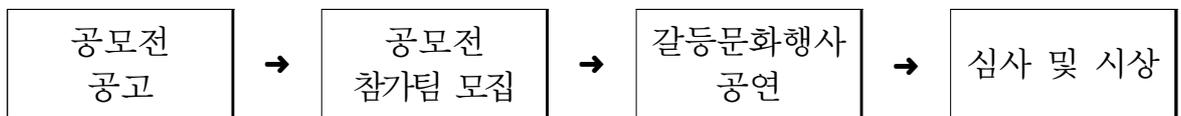
- 사업비 : 18,000천원(도비)
- 개최일정 : 2016. 11. 18.(금) 10:00~16:30 / 아산시 일원
- 사업내용

① 교육연극 프로그램 운영

- 방법 : 청소년에게 교육연극으로 공공갈등의 전개과정을 제시 후 극 속에서 벌어진 갈등의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
- 효과 : 교육연극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공공갈등의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고 학생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도록 유도하여 관심과 역량을 제고

② 2016 청소년 모의 갈등조정협의회 경연대회 개최

- 대상 : 도내 고등학생
- 주제 : 학교나 일상생활 속 작은 갈등부터 공공갈등까지 포괄
- 방법 : 5명 이상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 갈등의 전개와 해결과정을 연극, 뮤지컬, 콩트 등으로 구성하여 발표



- 기타 : 공모전 참가는 5개 팀에 한하며 1팀당 소정의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고, 발표결과 우수작은 상장수여

추진 계획

- '16. 5월 : 세부 시행계획수립
- '16. 6월~7월 : 모의갈등조정협의회 공모전 참가팀 접수
- '16. 11월 : 갈등문화행사 개최
- ※ 시·군의 행사홍보 및 참여 필요

② 지속 추진할 중점 사업

①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통한 갈등 예방

- 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7조
- 갈등 전·후 사안별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대응

추진 계획

▶ 공공갈등 영향분석

- 갈등영향분석 : 2건
- 소요예산 : 7,000천원(플러스충남)
- 분석내용
 - (유형) 사업의 특성, 쟁점, 이해관계자 분석
 - (쟁점) 사업추진의 문제, 내·외부 환경적 요인 분석
 - (제언) 정책제언 및 자료의 기술적 검토

⇒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정의 신뢰 확보

② 갈등관리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7조

추진 계획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지원
 - (운영) 보령공군사격장·서부내륙 고속도로 관련 협의회
 - (지원) 청양 강정리·내포 집단에너지 설치 관련 협의회
- 갈등 조정협의회 신규 구성·운영
 - 공공갈등 당사자 간 조정·협의 의지가 있는 갈등
 - 행정기관, 당사자, 전문가, 심의위원으로 20명 이내
 -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 ※ 필요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

⇒ 갈등관리 인식 전환으로 적극적·선제적인 갈등 대응으로 신뢰기반 구축

③ 갈등관리 맞춤형 교육

- 공공갈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이행

추진 계획

▶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갈등관리 정책세미나) 주민, 사회단체 대상(상·하반기)
 -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 민원 등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적 대안 모색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주민, 사회단체(2회)
 - 갈등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 (道 교육원 위탁 교육) 공무원 공공갈등 관리과정(상·하반기)
 - 조정·통합 역량향상과정(1차 : 6. 7. ~ 8, 2차 : 9. 1. ~ 2.)
 - 갈등관리 협상과정(9. 7. ~ 9. 9.)
- (담당관 워크숍) 도, 시·군 공무원 대상(상반기)

⇒ 공공갈등 교육을 통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갈등관리

④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 지역여건 및 갈등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

▶ 충남형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 (방 향) 지역 여건에 맞는 갈등 유형별 매뉴얼 제작
 - 갈등의 특성과 사안별로 나누어 실용성 중심의 지역 특수한 여건에 맞는 시스템 개발
- ※ 기존의 갈등관리 매뉴얼로는 갈등관리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효율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갈등 예방

Ⅲ 도-시군 협력사항

□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갈등 협력

- (도) 갈등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 (시군)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갈등 단계별 긴밀한 협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미구성 : 7개 시군(천안, 보령, 서산, 계룡, 부여, 홍성, 태안)

□ 공공갈등 역량강화 사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 협력대응

- (도) 공공갈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갈등관리 DB구축
*道 공무원교육원 갈등관리 과정 운영, 정책세미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 (시군) 민관네트워크 활성화(기초자료 작성), 갈등현장 정보 공유

□ 시군 갈등현장 컨설팅 지원 기능 강화

- (도) 충남연구원을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하여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 및 갈등현장에 대한 조정 등 지원 확대
- (시군) 「갈등전문기구」 활용을 통한 갈등예방 및 갈등현장 대응 능력 강화

※ 그동안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에서 운영해 온 권역별 포럼(4개 권역) 개편

- 시·군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연계 되도록 재구성하여 갈등예방 및 중재·조정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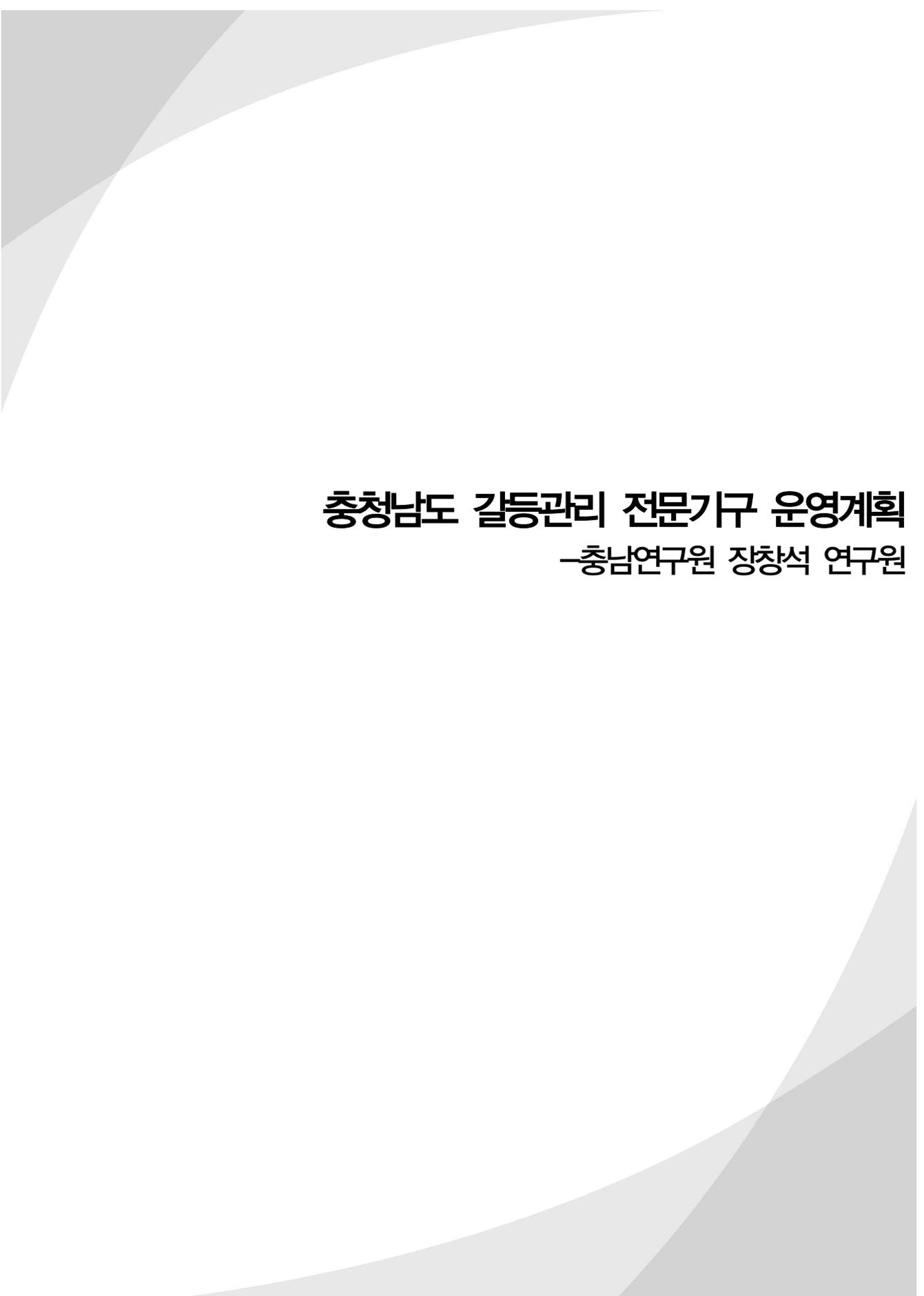
【참고】 道 공무원교육원 2016년 갈등관련 교육과정

◆ 조정·통합 역량향상과정(각 30명, 14시간)

- 1 차 : 6. 7(화) ~ 8(수)
- 2 차 : 9. 1(목) ~ 2(금)

◆ 갈등관리 협상과정(30명, 21시간)

- 9. 7(수) ~ 9. 9(금)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

I 道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 계획

1 일반현황

- 설치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
- 운영 경과
 - 2006. 6 :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 운영계획 통보(행정자치부→충청남도)
 - 2006. 7 :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 운영계획 통보(충청남도→충남연구원)
 - 2006. 10.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
 - 2007. 5. : 포럼정관 개정에 따른 사무국 설치
 - 2007. 5. 23. : 포럼운영기관 지정협약(충청남도↔충남연구원)
 - 2007. ~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 2016. 4. ~ : 충남연구원 도 갈등관리 전문기관 지정 운영(예정)

2 주요기능

-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 매뉴얼 개발
-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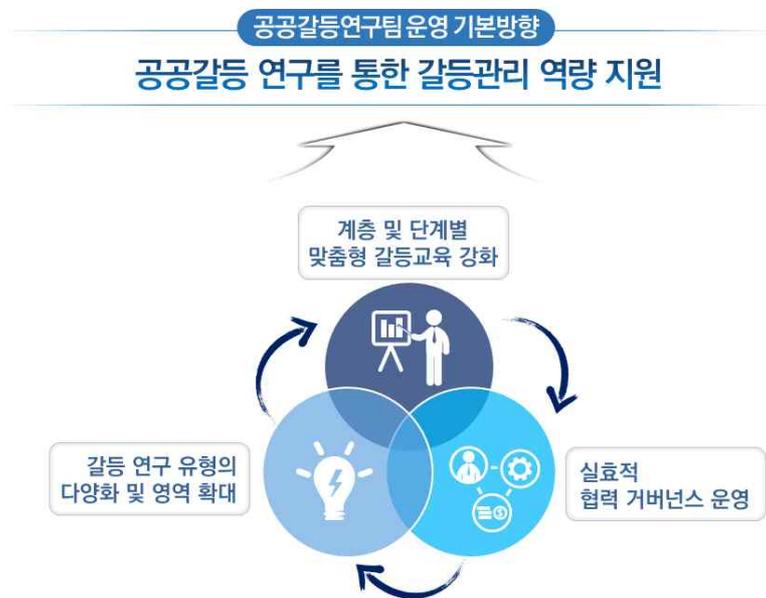
3 주요업무

-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한 해결방안 제안
- 갈등현장에 대한 갈등조정·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
-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갈등관리 교육·홍보
-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 기타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갈등관리 전문기구 개선 및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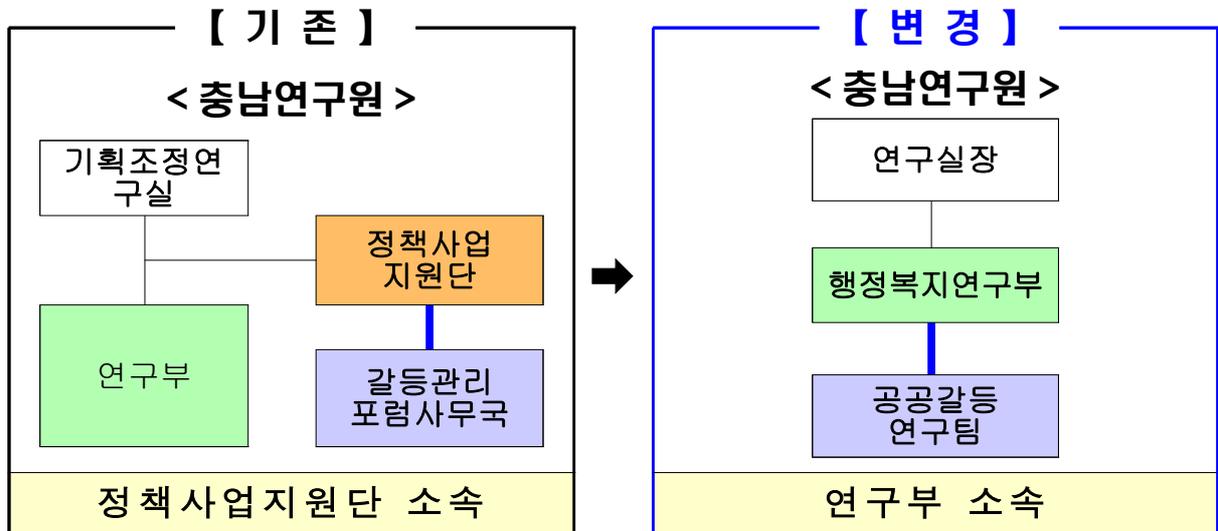
□ **추진방향**

- 갈등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조직변경 및 기능개선
 - 충남연구원의 연구인력, 연구 노하우, 현장전문가 활용
- 공공갈등 연구를 통한 갈등관리 역량 지원
 - 갈등 연구 유형의 다양화 및 영역 확대
 - 실효적 협력거버넌스 운영
 - 계층 및 단계별 맞춤형 갈등교육 강화



□ **조직 구성**

- 조직 및 명칭 변경
 - 정책사업지원단 갈등관리포럼 사무국 → 연구실 행정복지연구부
 - 충남갈등관리포럼사무국 → 공공갈등연구팀
 - 갈등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연구원 내 ‘공공갈등연구팀’ 운영



○ 인력 및 재원

- 조직 변경 및 기능개선 조기 정착을 위한 기존 인력, 재원 승계
- 現 연구원 內 포럼 업무 담당 연구원을 전담인력 배치
- 공공갈등 발생시 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 활용을 통한 공공갈등의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 기능 개선 방안

○ 공공갈등 연구의 다양화, 영역확대

- 충청남도 갈등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공공갈등 기초연구,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 연구기능 강화
- 연구원 내 전문가를 활용한 갈등 유형별 심층 연구 수행
- 질적 수준이 향상된 공공갈등 연구 진행
- 지역과 소통하는 정책연구 수행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을 통한 자문기능 보완
-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장에 대한 대응 능력 저하 보완
-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등 갈등조정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

- 도내 갈등관련 조직 및 관련부서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강화
- 갈등관련 담당관, 시민단체, 대학간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 및 충청남도와의 연계협력방안 마련
-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의 공공갈등 발생 초기의 자문기능 강화

○ 계층 및 단계별 갈등교육 수행

- 공공갈등의 효과적 대응과 실무자들의 갈등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 교육 강화
- 계층 및 단계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프레임 구축
- 공공갈등 발생시 충청남도 내부적 해결의 역량마련을 위한 기틀 마련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소통 강화

○ 공공갈등 지원활동 강화

- 갈등현안 파악 및 조정활동 지원
- 충남연구원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 및 현장 해결 역량강화, 갈등유형별 조정 지원
- 지원활동 중심의 연구지침 마련 및 적용가능한 평가분석보고서 작성
- 대안 정책모델 및 적용 분석 등 공공갈등 해결방안 제안

II 2015 사업 성과 및 2016 사업계획

1 2015년 사업 성과

-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활동을 통한 갈등 조기 해결 노력
 - 연구, 토론, 여론형성 및 갈등현장지원 활동
 - 공공정책갈등 사전예방 및 해소
- ◆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상생협력의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

□ 갈등관리 정책지원

- 道 갈등현안 갈등영향분석(4건)
 - 부여 폐기물매립장 설치갈등
 -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 선정 갈등
 - 당진 345KV 송전선로 건설 갈등
 - 당진 군부대 이전사업 갈등
- 갈등관리 기획과제 연구 수행(1건)
 -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방안:사업장 입지갈등 사례’ 연구

□ 갈등관리 교육사업

- 갈등조정 전문가 아카데미 개최(2회)
- 갈등관리담당관 교육연수 개최(1회)
- 충청남도 갈등현안 정책토론회 개최(2회)

□ 갈등해소 홍보사업

- ‘충남리포트’ 년 4회 발간 中 갈등관리 부분 발간
- 갈등관리포럼 홈페이지 리뉴얼

□ **갈등현장 지원사업**

- 갈등현안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지원
 -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민관협의회(7회)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갈등 민관협의회(8회)
 -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갈등 민관협의회(8회)
- 道 갈등현안 정책간담회 개최(13회)

② **2016년 사업추진 계획**

- ◆ 공공갈등 연구를 통한 갈등관리 역량 지원
- ◆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관 운영

□ **목 표**

- 갈등 연구 유형의 다양화 및 영역 확대
- 실효적 협력거버넌스 운영
- 계층 및 단계별 맞춤형 갈등교육 강화

□ **갈등관리 연구조사**

- 道 갈등현안 갈등영향분석
-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 **갈등관리 정책사업**

- 갈등관리 전문가 포럼 운영 및 현장지원
- 공공갈등관리 정책세미나
- 공공갈등관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갈등관리 관계관 역량강화 지원

□ **갈등해소 홍보사업**

- ‘충남리포트’ 년 4회 발간 中 갈등관리 부분 발간
- 갈등관리포럼 전용 홈페이지 운영

□ **갈등현장 지원사업**

- 갈등현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道 갈등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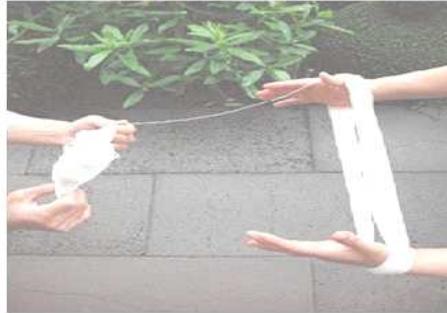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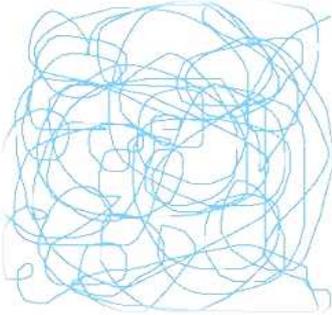


특강자료

- 지자체 갈등관리와 갈등해결전략
(국토교통부 시화호 관리위원회 서정철 위원)



지자체 갈등관리와 갈등해결전략



서 정 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사)한국갈등학회 이사



Index

-  1. 갈등관리 바로알기
-  2. 지자체갈등의 원인찾기
-  3. 상생협력 방안 찾기
-  4. 합의형성 설계 방안



갈등관리 바로 알기



○ 갈등이란 ?

-서로 추구하는 목표(이해관계)가 양립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

-다투거나 다투는 과정 (Process, Event)

-쟁점 : Goals, Interests, Values. Needs 등

3



갈등관리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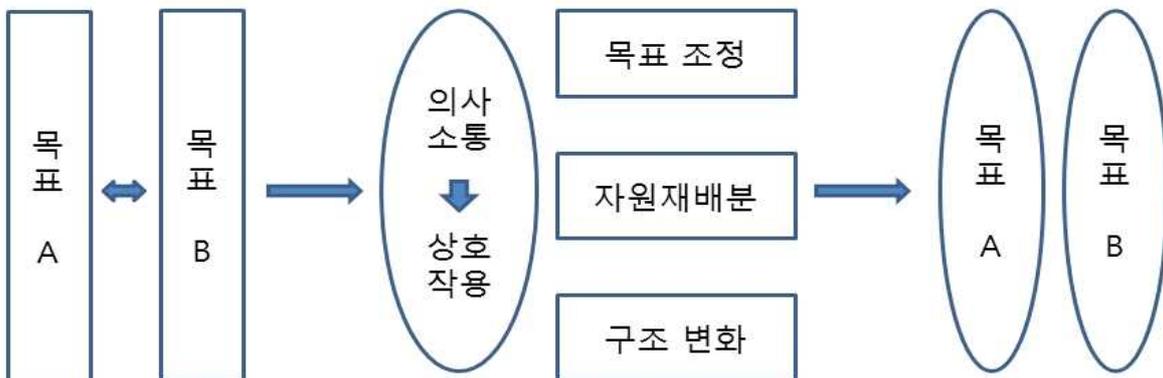


○ 갈등해결이란 ?

당사자들의 목표간 양립불가능 상태

문제해결 과정

당사자들의 목표간 양립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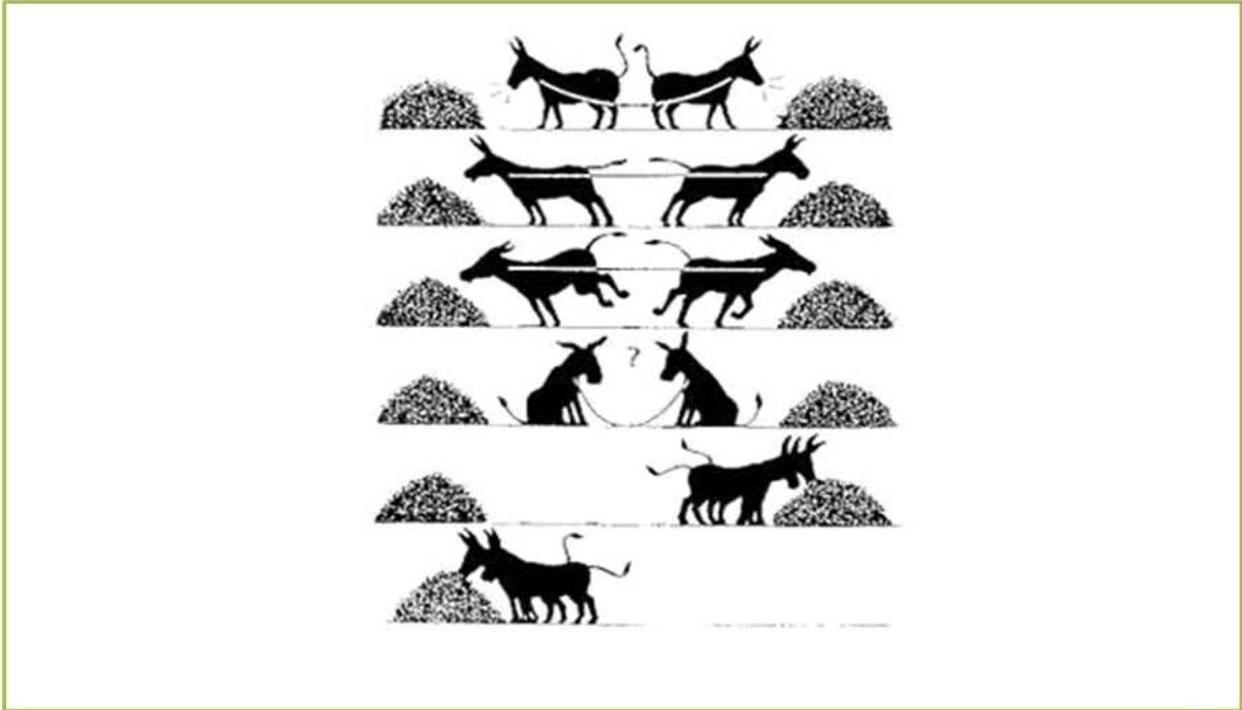


[갈등분쟁해결메뉴얼-강영진]

4



갈등관리 바로 알기



5



갈등관리 바로 알기



○ 세종과 공론 정치

- 세금제도 개혁 : 세종 이전 세금제도는 손실담험제
: 인정과세가 아닌 정액제로 개혁하고자 함.
: 전분 6등 (비옥도), 연분 9등제(풍년, 흉년, 등 기후) 총54개
: 기후 및 전국 토지조사 비옥도 측정 (당시 기술력 한계)
: 집현전 학자들까지도 반대
- 여론조사 실시 : 백성 17만명 참여(찬성 9만 8천 명, 반대 7만 4천 명)/ 400만명
/ 직접 방문 여론조사 / 8개월
"정부, 육조와 각 관사, 각도의 감사, 수령으로부터 민가의 빈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세종실록 12년 3월 5일-
- 지역별 소출 차액을 세제에 반영하는 공법(쟁점) / 세종의 현지답사, 백성 반대시위
- 1436년 부분적으로 시행 / 1443년 전국적 시행 공고 / 17년
- 조세부담 감소 (토지1결당 30두에서 최하4두)/ 국가 비축 곡식 증가(최고 500만석)

6



갈등관리 바로 알기



○ 갈등해결이란 ?

목표 조정

- 오해해소, 감정적 보복의 포기
- 입장에서 실익으로의 목표 전환

자원 재배분

- 당사자간 물질적 정신적 자원의 이동(보상/사과)
- 재분배의 방법과 절차에 합의

구조변화

- 구조(제도, 환경)의 변화를 통한 양립 가능성 강화
- 기술발전, 파이의 확대, 상호관계 조정, 구조개혁 등

7



갈등관리 바로 알기



○ 공공갈등 관리의 중요성

사실관계 갈등
이해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
관계상의 갈등
가치관련 갈등



갈등의 원인

정부
지자체
(찬성, 반대)
정치인
주민
(찬성, 반대)
시민사회



갈등구조의 복잡성

공익과 사익
재산권
이익과 가치
법적 소송
사회적 갈등
정치 갈등



갈등해결의 난해성

8



갈등관리 바로 알기



○ 기본적 욕구 (Basic Needs Theory. J. Burton)

= 사회심리적 욕구 4가지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욕구

정체성에 대한 욕구

9



갈등관리 바로 알기



○ 기본적 욕구의 특징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욕구가 있다.

-기본적인 욕구가 억압되거나 침해되면 반드시 갈등이 발생한다.

-그 갈등은 기본적 욕구의 억압-침해상태-해소될 때까지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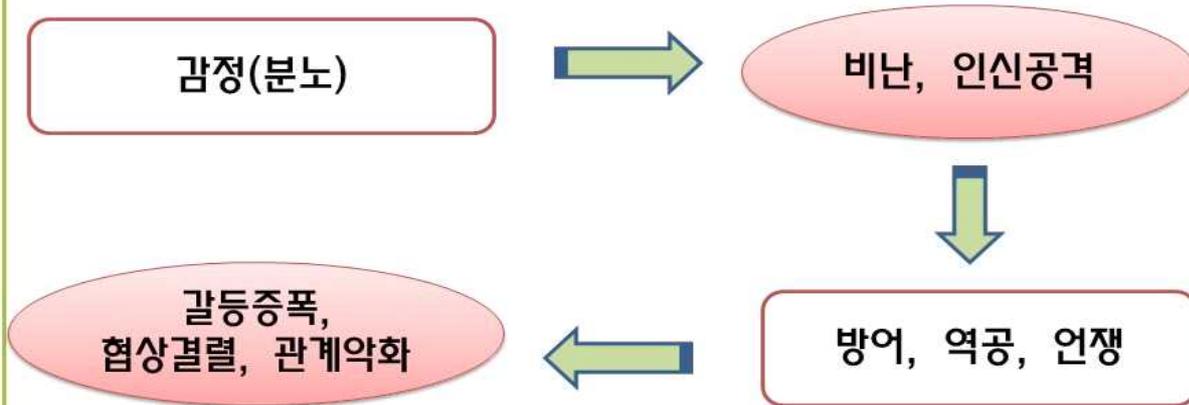
10



갈등관리 바로 알기



○ 기본적 욕구가 억압되었을 때 갈등 전개과정



-이해관계자의 **감정(분노)**에 주목하라!!!

11



갈등관리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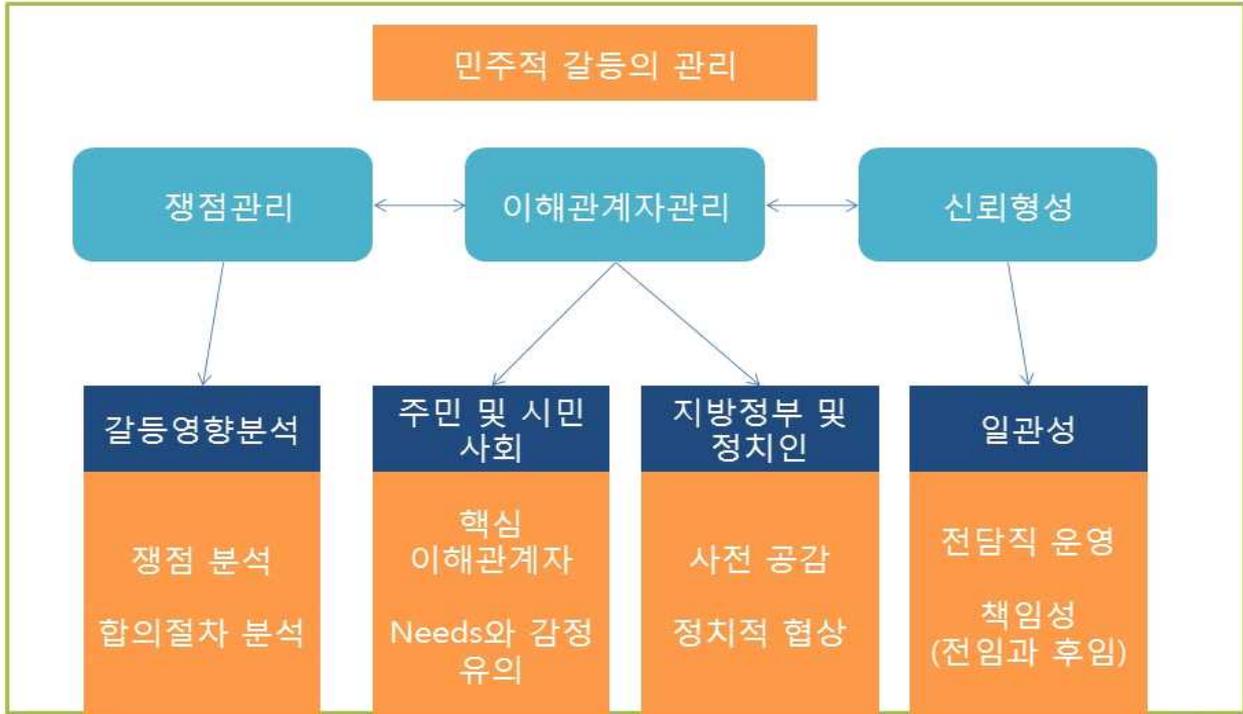
○ 갈등해결의 기본 원칙 (Problem Solving)

- 갈등은 문제와 증상의 복합체이다
-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책이 나온다
- 당사자만이 문제와 그 해결책을 알 수 있다.
- 문제의 유형/성격에 따라 해법이 다르다
- 갈등해결방안의 만능키는 없다 !!!
- 갈등발생은 자연스러우나, 갈등예방과 해결은 인위적이어야 한다!!!

12



갈등관리 바로 알기



13



지자체 갈등관리 현황



○ 갈등관리에 대한 제도적 노력

갈등관리규정/국민권익위법 규정에 의거 조례 마련(2015년 4월기준 총51개)

- 1) 갈등관리 규정에 의거 : 예방 및 해결 활동, 갈등분석/협의체 구성 등
 - 서울, 경기, 충북, 전북, 광주, 대전, 충남 등(갈등조정위원회, 조정관제 등)
- 2) 권익위법에 의거 : 갈등사후활동,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등)
 - 강원/ 고충처리위원회 조례 마련(2012년) 및 위원회 운영
 - 부천(1997년 부터) 등을 시작으로 12개 광역기초지자체(2012년 기준)
- 3) 특별법에 의거 : 갈등예방활동
 - 제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마련(2007년) 및 위원회 운영
- 4) 기타 : 근거법령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
 - 경기/위원회 형식의 조례 마련(2014년) 및 위원회 운영
 - 서울/감사기능 강화를 포함한 조례 마련(2015년), 조정관제 운영(2012)

14



지자체 갈등관리 현황



○ 갈등관리 업무 관련 문제점

갈등관리 업무 기능 및 연계

- 1) 갈등관리 총괄기능과 역할의 한계
 - 타 업무와 중복되어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고, 행정업무 차원으로 인식하여 단순히 현안 취합, 보고 수준의 업무 대부분임.
 - 현장 및 현안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전문영역으로 인정받지 못 함.
- 2) 사업단계별, 분절적 갈등관리 진행
 - 사업단계 완수가 목적으로 갈등관리는 부차적 업무로 인식
 - 담당자는 갈등관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 전가
- 3) 전략 차원의 갈등관리의 어려움
 - 갈등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이 어려우며, 이를 통한 전략마련도 쉽지 않음

15



지자체 갈등관리 현황



○ 갈등관리 업무 관련 개선방안

갈등관리 업무 기능 및 연계

문제점	개선 과제
갈등관리 총괄 기능과 역할의 한계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 *갈등관리 전담자 배치를 통한 역할 강화 *전담자의 갈등관리 전문성 강화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략회의운영
사업단계별, 분절적 갈등관리 전략적 갈등관리의 어려움	-단계별 연계성 강화 *갈등관리 총괄부서와 실무라인의 연계 강화 *갈등현안대책회의 상설화 *단계별 갈등관리 책임성 강화

16



지자체 갈등관리 현황



○ 갈등관리 역량 관련 문제점

갈등관리 역량강화

- 1) **담당자의 관련 전문성 낮음**
 -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정, 협의체 구성,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 전문성 낮음
 - 갈등관리 이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또한 부족한 실정임
 - 실무부서 담당자도 대부분 공학 기술자가 많음
- 2) **교육 선순환의 어려움**
 - 잦은 인사교체, 갈등관련 미교육자가 관련 업무수행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실무(현장)와는 괴리감이 높아 활용력 한계
- 3) **개별 역량에 의존하고 노하우 축적의 한계**
 -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담당자 간 역량편차가 심함
 - 갈등관리 DB 구축 미비로 기존의 관리경험 및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함

17



지자체 갈등관리 현황



○ 갈등관리 역량 관련 개선방안

갈등관리 역량 강화

문제점	개선과제
갈등관리 전담자의 업무수행 한계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자체해결 역량 제고) *매뉴얼 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현장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 한계	*해당 분야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갈등교육의 의무화
갈등관리 업무 효율성 저하	-전담자에 대한 갈등관리 수준 고도화 *관련업무의 확대 *보고체계 구축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는 갈등관리	-갈등관리 담당자 참여 우수사례발표 및 워크숍활성화 -갈등관리 DB구축 -갈등관리 매뉴얼 실무활용 능력 제고

18



지자체 갈등관리 현황



○ 갈등관리 평가체계 관련 문제점

갈등관리 평가체계

1) 갈등관리 노력 평가가 매우 미흡함

- 업무 평가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중심
- 담당자는 갈등해결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고, 갈등회피에 따른 책임 없음
- 갈등관리내용 업무평가 낮은 수준임(BSC 성과관리지표에서 매우 낮은 수준/ 국토부 5% 수준)

2) 산하기관(담당부서)에 대한 갈등관리 평가 미흡

- 갈등관리 수행평가가 실제 관리주체인 산하기관(담당부서)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 함
- 2013년 이후 일부 갈등다발 부처, 기관에 전담부서, 혹은 전담자 지정(현재 없어짐)

19



지자체 갈등관리 현황



○ 갈등관리 평가체계 관련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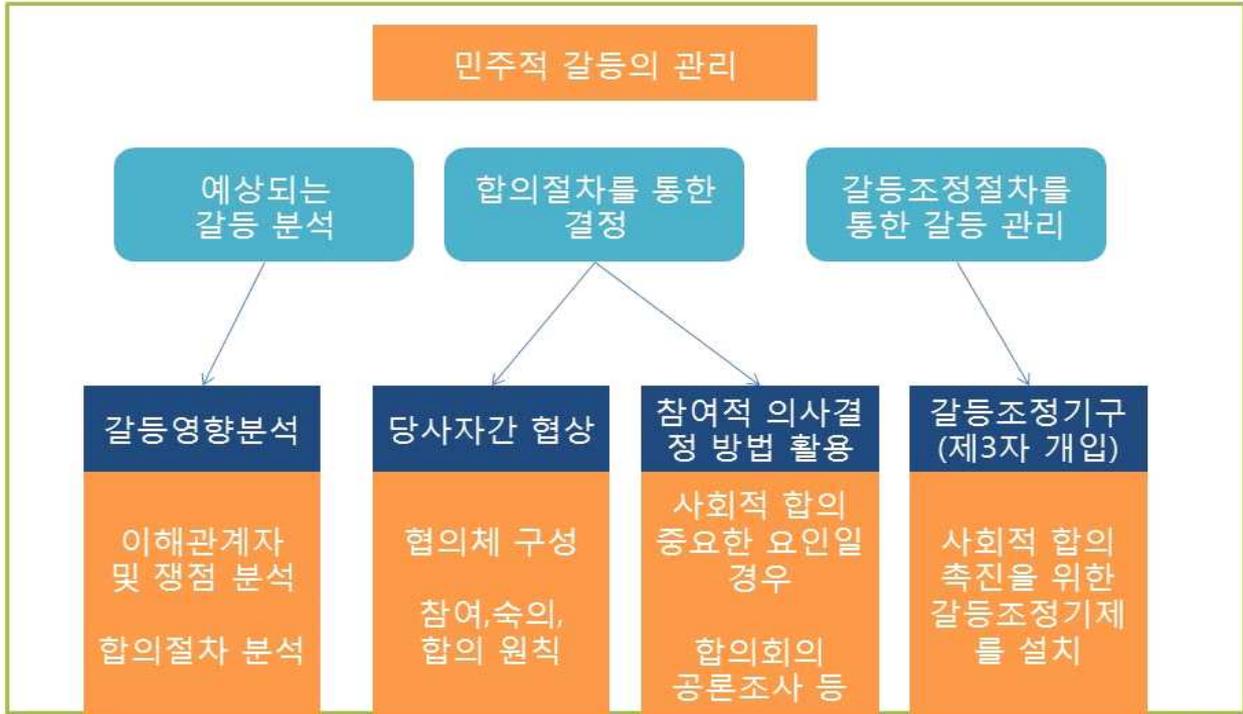
갈등관리 평가체계

문제점	개선 과제
갈등관리 노력 평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평가내용을 예방과 해결로 분리하고 관련 평가항목 명확화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갈등관리 평가대상을 구체적 명시 *BSC 성과관리 평가 항목 중 갈등관리 노력 비율 상향 *단순히 개최 횟수보다는 당사자 참여 여부에 가중치
산하기관(담당부서)에 대한 갈등관리 평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하기관(담당부서)에 대한 갈등관리평가 실시 *자체 갈등관리 평가 기준 마련 *평가결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각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련 역할 부여

20



상생협력 방안 찾기



21



상생협력 방안 찾기



○ 갈등관리 전략 Key-Point



22



상생협력 방안 찾기



○ 갈등관리 전략 Key-Point

문제해결능력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의사소통능력



상대방의 입장과 관심사를 공감하고 있는가 ?

협상능력



Joint Problem - Solving

23



합의형성 설계 방안



○ 합의형성 설계를 통한 갈등관리 전략

준비



모든 당사자 참여 원칙
초점은 협력

과정



문제해결에 초점
당사자들의 과정설계에 초점

결과



모든 결정은 합의

24



합의형성 설계 방안



○ 갈등조정협약체 구성과 운영에 따른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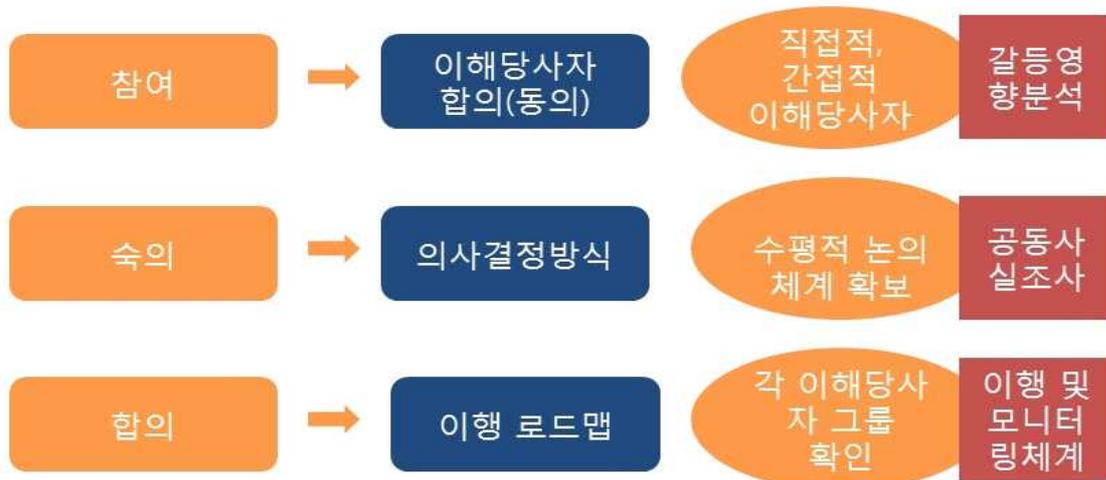
25



합의형성 설계 방안



○ 갈등조정협약체 구성 및 운영 전략



26



○ 합의형성을 통한 갈등해결의 주안점

- 공동문제를 공동해결하는 것이 이전 방식보다 낫다는 인식 전환
- 정책담당자의 진정성과 능력에 대한 신임이 관건
- 신뢰는 민주적 논의과정을 설계함으로써 높아질 수 있다.
- 하고 싶은 말을 다하게 하고, 의욕과 정보 불균형 해소가 관건
- 일괄타결 방식 보다는 부분적 타결 방식(조건부합의, 시한적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전반의 폭 넓은 이해 필요

27

감사합니다



사·군 갈등현안 및 잠재갈등 현황



갈등현안 및 잠재갈등 현황 목록

시·군	갈등현안	갈등분야
천안시	신방동 쌈지공원 설치 갈등	지역개발
공주시	정안천 생태공원 및 시도 37호선 인근 도축장 악취 민원	환경피해
보령시	웅천 공군사격장 관련 민과 군의 잠재적 갈등	환경피해
아산시	도고, 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악취 민원	환경피해
서산시	공공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갈등	지역개발
논산시	광석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민원	환경피해
계룡시	엄사 화요장 이전 및 정비 관련	지역상권
당진시	당진시 군부대 이전 사업	지역개발
금산군	복수면 신대1리 사설임도 개설	지역개발
부여군	은산면 폐기물매립장 설치	폐기물매립장
서천군	신 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협약이행 관련	지역개발
청양군	청양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설치	폐기물매립장
홍성군	홍성고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갈등	지역개발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 노선	교통관련
태안군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	지역개발

□ 천안시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 등 내 용	진 행 경 과	향 후 전 망
<p>신방동 쌈지공원 설치 갈등</p>	<p>○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일대 쌈지공원 조성 검토 (사업규모 미확정)</p>	<p>○ 공원조성 예정지역은 21번 국도와 연계된 지역으로, 해당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쌈지공원 조성 대신 국도변을 따라 폭4m, 길이 400m의 인도 설치를 요구 ⇒ 인도가 없어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 주장</p>	<p>○ '16. 3. 3. : 인도설치요구 집단민원 진정서(132명) 제출</p> <p>○ '16. 3. 9. : 산림녹지과⇒ 쌈지공원 조성 계획 철회 통보 (인도설치는 사업비 등을 이유로 추후 검토)</p> <p>○ '16. 4월 현재 : 인도설치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1,000인) 진행 중</p>	<p><시민배심제 상정 검토 중></p> <p>○ 이 지역은 도시계획 등 관련법 및 안전문제로 인도설치 불가</p> <p>○ 주민들은 보행불편을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 해당지역의 도보 이동 인구는 거의 없음</p> <p>○ '15년 해당 지역에 동 주민센터 이전으로 지역 개발욕구 및 기대치 상승에 따른 이익갈등</p> <p>○ 주민참여형 절차설계에 기반한 적정한 갈등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지속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p>

□ 공주시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 등 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p>정안천 생태공원 및 시도 37호선 인근 도축장 악취 민원</p>	<p>[도축장 개요] - 사업자 : 백제나루 영농조합법인 - 소재지 : 의당면 의당로 216 - 최초 허가일 : 1992. 3. 5. - 1일 도축량(두) : 돼지(1,000), 한우(50)</p> <p>[악취종합대책 추진] - 사업기간 : '15.7.1-'16.1.6(약6개월) - 사업비 : 705백만원(자담700, 시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방지법에 의한 측정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됨에 따라 행정력이 미치지 않음 -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 되더라도 권고 사항으로 강력한 행정력에 한계가 있음 ○ 민원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해결 되지 않아 행정 불신 ○ 사업주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 발생은 인정 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악취방지사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소극적 대처 ○ 공주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와 법적인 측면에서 공감 하면서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십 년간 환경 민원을 감수 하고 있는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발생원 전수조사 실시 ○ 관련부서 협의: 건설과 도시정책과 허가과, 수도과, 기술보급과 ○ 합동 현장 확인: 공주시 + 사업주 ○ 사업주와의 미팅: 공주시 + 사업주 ○ 종합토론회 개최: 공주시+사업주+건축사무소+환경 전문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악취개선 권고사항 사업주 수락 및 악취 개선 대책 법적 검토 완료 ○ 공주시(부서별) + 사업주 악취개선 종합대책추진 정립 ○ 도축장 악취 종합대책 계획 수립 추진 ○ 담장을 활용한 환경개선 완료 ○ 주2회 현장 확인 및 추진방향 협의 : 공주시 + 사업주 ○ 도축장 주변 환경 정화수 식재 ○ 도축장 악취방지사설 +악취 밀폐시설 완료 : 사업주 ○ 도축장 악취개선 추진 최종보고 ○ 사업장 악취모니터링 실시 :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81% 악취 저감효과 (개선 전 20 , 개선 후 3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시설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 되었던 고질적인 악취 민원 Zero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수십 년간 지속된 악취 민원 해결로 시민행복지수 향상 및 신뢰행정 구축 ○ 부서별 사업주, 협업 및 소통행정 구현으로 사업비 7억원 절감 효과 ○ 시민 행복실현 구현을 위하여 악취모니터링 주기적 실시로 지속관리

□ 보령시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 등 내 용	진 행 경 과	향 후 전 망
<p>웅천공군사격장 관련 민과 軍의 잠재적 갈등</p>	<p>○ 대표협의체 구성·운영 요청(軍 ⇨ 市에 건의) * 공군 제20전투비행단</p>	<p>○ 공군사격장 관련 공군과 지역주민 20년 이상 갈등 ○ 현재 민과 軍의 위원장 선임 문제 대립 (만 부시장 軍 대학교수)</p>	<p>○ 2015. 8. 7. 민·관·군 협의체 구성 건의(공군 제20전투비행단) ○ 2015. 9. 2. 민간 위원과 공무원 위원을 시에서 軍 측에 추천 ○ 2015. 9. 23. 제1차 민관군 실무 협의(웅천읍사무소) ⇨ 민과 軍의 견해차(협의체 구성 의도에 대한 주민 불신, 민간위원 구성인원 / 군 3~4인 만 10인 이상) ○ 2015. 11. 5. 민 측 의견을 軍에 통보 ⇨ 의장 외부영입 반대, 간사는 민과 관이 공동, 세부사항 실무 협의회에서 확정 ○ 2015. 11. 23. 공군전투비행단 검토의견 회신 ⇨ 의장은 외부전문가(대학교수) 영입 (기존 입장 교수) ○ 2016. 2. 26. 협의체 구성을 위한 작전지원전 대장 부시장 면담 * 현재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회 개최 예정(4월 중) - 우리시는 민과 군의 의견을 조율 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갈등 문제의 원활한 해결 유도 및 민과 군의 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함</p>	<p>○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위원장 선임 추진 중</p>

□ 아산시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 등 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p>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 시설 사업 약취 민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도고면 선장면 일원 ○ 사업규모 : Q=5,200m³/일, L=11.74km ○ 사업기간 : '09. 9. ~ '14. 12 ○ 사업비 : 366억원 (국비 256, 도비 37, 시비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안내 불충분 및 약취에 따른 생활불편 처리장 위치 변경 등 무리한 요구 ○ 하수처리장 이전이 불가하다면 배기구(굴뚝) 106m (설계12.7m)설치, 도고면 신언4리 주민만을 위한 주민이주대책 수립, 주민숙원사업(농기계보관창고 지원, 농산물공동작업장 지원, 태양광발전단지시설 지원)등 실현 불가능한 요구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5. 4. : 최초 민원제기 ○ 2012. 7. 11. : 용인 수지 하수처리장 현장 방문(타 시군 벤치마킹 및 주민 설득 일환) ○ 2012. 7. 26. :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 ○ 2012. 10 .29. : 소 기각 결정 ○ 2012. 12. 4. : 공사 중지 가처분 항소 ○ 2013. 11. 4. : 공사 중지 가처분 항소 기각 결정 이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요구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m 배기구(굴뚝) 설치 → 20m 배기구 증설 설계 변경 - 지하 1,2층 공간약취 이중탈취 시설 설치요구 → 지하 1,2층 공간 약취는 소량으로 피해 없음 - 혐오시설 입주민에 대한 주민보상 요구(묵시적) → 약취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주민이해 협조 당부 ○ 2016. 3.현재 80여 차례 민원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고한 기준과 철저한 법 집행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 ○ 하수처리장의 세심하고 철저한 운영으로 민원 소지 사전 예방 및 전국 모범 사례로서 주민 설득 지속 노력

□ 서산시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 등 내 용	진 행 경 과	향 후 전 망
<p>공동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결정에 따른 주민갈등 -공동주택(오스카빌) 단지 앞 학교부지 형질변경 입안 결정에 따른 갈등</p>	<p>○ 우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921-6번지 일원(늘푸른 오스카빌)</p> <p>○ 갈등원인 - 서산교육지원청의 해당 부지 내 학교신설계획(신설기준 미달 등)없음 - 소유자의 도 시·군관리 계획 입안 제안 요청 ⇒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결정[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학교)를 주거 용지로 변경]</p>	<p><토지소유자> ○ 집행계획 없는 공공용지의 존치로 재산권 침해</p> <p><공동주택 입주민> ○ 부성초 90%이상의 학생(452명)이 오스카빌에 거주 - 부성초 통학으로 교통위험 통학시간 소요, 스쿨버스 비용 등 비효율적 - 주거용지로 변경후 원룸 등 다세대주택단지 조성 시 인근 공장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종상가 입점 등으로 주거 및 교육 환경 저해 우려 ⇒ 용지변경 반대 및 학교 신설 요구</p>	<p>○ '99.5: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 '00.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06.2: 서산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 '06.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5.10: 주민제안 요청 ○ '15.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결정 통보 ○ '16.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 '16.2: 늘푸른 오스카빌 주민 진정서 검토요청(서산교육지원청) ○ '16.2: 늘푸른오스카빌 학교설립 관련 주민공청회 개최 ○ '16.2: 서산교육지원청 의견 회신(학교신설계획 없음) ○ '16. 2월 ~ 4월: 학교신설 요구 집회</p>	<p>○ 학교부지 존치 및 학교 신설시 ① 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행정소송 등) ② 부성초와 총동문회에서 학교 이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양상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면민간의 갈등)</p> <p>○ 학교부지 형질 변경 할 경우 - 공동주택 입주민 불만 미 해소로 지속적인 집회 등 민원 발생예상</p>

□ 논산시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 등 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p>광석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민원</p>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14 ~ 2015(2년) - 사업비 : 3,000백만원 (기금 1,200, 도비 270, 시비 630, 용자 900) - 부지면적 : 19,483m²(건축면적 3,362m², 악취방지시설 1식) - 1일 처리량 : 7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은 광석 양돈단지와 축협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로 1993년부터 22년간 악취로 주민생활 불편 야기 → 2015. 7. 2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반대 민원 발생 ○ 민원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공동자원화사업 현지평가(2014. 2.) 당시 당초 기존 시설을 보강하여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 한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기존 시설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신축 하면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반발 - 주민요구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추진 중인 공사 중단 ② 관련 인허가 취소 ③ 보조금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10. 02. : 광석면 마을대표단 구성(8명) ○ 2015. 10. 20. : 악취 저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단지 원에게 악취 저감 대책 설명 및 의견청취 ○ 2015. 11. : 주민과 축협 간담회(1, 2차) ○ 2015. 12. 11. : 공동자원화 사업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자 회의 ○ 2015. 12. 18. : 공동자원화 사업관련 주민과 축협 간담회(3차) ○ 2016. 01. 19. : 민원해소를 위한 실무자 협의 → 3차 간담회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 주민대표단과 세부사항 일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및 사업부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道 축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사업비 증액 : 30억 → 40억(자부담 10억 추가) - 道 계획변경 승인 후 공사 재개(3월) - 10월 준공 및 시험가동 예정 ○ 광석양돈단지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비순환 시스템, 악취 저감시설 단지 환경정리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 신청 및 추진 ○ 광석양돈단지 방역소독 차량 지원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광석양돈단지 - 지원내용 : 가축방역소독차 - 사업비 : 35,000천원 (지방비 70%, 자담 30%)

□ 계룡시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 등 내 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p style="text-align: center;">업사 화요장 이전 및 정비 관련</p>	<p>○ 계룡시, 업사상가번영회 & 화요장 노점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여 년간 계룡시 업사지역 주 간선도로를 불법 점용하여 지역상권을 침해하고 불합리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과 기존 상인회와 마찰 심각 ○ 노점상이 200개 이상으로 대표자가 있지만 개별적인 업체가 많아 상반된 의견으로 상호간 충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위임업체 전체 노점상중 40% ○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 및 합의사항 과다 요구 ○ 화요장 주변 불법주정차 (2~3중 이면주차)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 업사 화요장 철거 계획 수립→상생전환 ○ 2011년 : 화요장 존치여부 시민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이전 36.8% 존치 34.5% 폐지 28.7%) ○ 2015년 : 업사 화요장 이전 T/F팀 신설 ○ 2015. 8. : 업사 화요장 종합대책협의회 구성 ○ 2015. 8. : 업사 화요장 이전 타당성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분석, 사례분석, 정비 방안 등 수립 ▶ 이전 부지 및 대상(200개 노점업체)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화요장과 더불어 문제되었던 교통체증을 업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해결하였고 공영주차장 주변지역에 대한 화요장 이전을 추진하여 상설시장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추진

□ 당진시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 등 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당진시 군부대 이전 사업	○ 이전규모 : 137,523㎡ (채운동 → 고대면 대촌 · 장항리 일원)	○ 市, 2대대, 국방부 ↔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간 갈등	○ 2015.5.20: - 국방부 합의 각서(안) 승인 ○ 2015.5.26: - 후보 지역에 이전계획 전달	○ 이전 추진이 구체화될 경우 후보지 주민 반발 예상 ○ 국방부 및 기재부 사업 방침 등 관찰하여 사업성 종합 검토

□ 금산군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 등 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복수면 신대1리 사설임도 개설	○ 사설임도 17km 개설	○ 산림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혹제기 (석산개발, 골프장 개설 등) ○ 임도 초입부 재해위험 우려로 주민반대	○ '11. 8. 30 :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 ○ '12. 9. 3 : 군 청사 반대집회 실시 - 마을주민 60여명 ○ '14. 3. 31 : 산지일시사용신고 취소 및 복구명령(군→수허가자) ○ '14. 4. 21 : 수 허가자 취소청구 제기 ○ '14. 10. 7 : 취소 청구소송 군 패소 ○ '16. 2. 3 : 수 허가자 측 및 주민 대표 현장협의 ○ '16. 2. 12 : 군청사 반대집회 실시 - 마을주민 50여명	○ 군은 수 허가자와 마을 주민 간 협의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할 계획

□ 부여군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 등 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p style="text-align: center;">은산면 폐기물매립장 설치</p>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산25-1번지 일원 - 사 업 자: (주)한맥 - 토지매입 시기: 2012. 6. - 매입대상 토지: 811,840㎡ (사업면적: 421,206㎡) - 매립용량: 7,895,250톤 (30년 운영계획) - 매립 대상: 폐주물사, 폐내화물, 분진 등 지정폐기물 	<p>○ 지역주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은 상습 재난지역으로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매립 폐기물이 유실되는 경우 엄청난 환경재앙 발생 - 부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친환경 농업과 굿뜨래 농산물 판매가 주 소득원이나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지역 농산물의 소비가 급감하여 지역경제 붕괴 - 백제의 왕도로 문화 관광 이미지 실추 및 세계문화유산 등제에 악영향 등 <p>○ 사 업 자 : 법령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사업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5월, 8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신고(반려 처분) ○ 2014. 10월: 3차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 처분) ○ 2015. 3월: 3차 산지일시사용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현재 진행 중) ○ 2015. 09. 23 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부여군 승소) ○ 2015. 10. 08 원고측 항소 ○ 2016. 02. 01. 대전MBC 시사플러스 취재 (매립예정지 진행사항 취재) ○ 2016. 3. 8. 항소이유서 제출 ○ 2016. 3. 23. 답변서 제출 ○ 2016. 3. 24. 1차 변론 ○ 2016. 4. 14. 판결 	<p>○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접수하는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하여 적의 대응 <p>○ 갈등조정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등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고의 부도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 매립시설 등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국가가 운영하도록 법령 개정 - 산업시설은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나 경기지역은 토지 매입비가 과다 소요되어, 거리가 가깝고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충청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다수 입지 계획이므로 권역별 폐기물 처리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

□ 서천군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 등 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p>신 서천화력 발전소 건설 (협약이행 세부계획 수립)</p>	<p>[발전소 건립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천군 서면 마량리 313-2 일원 ○ 사업기간 : 2015.7-2019.9. ○ 예산규모 : 1조 6,138억원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 (1,000MW) <p>[협약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결주체 : 서천군-한국중부발전(주) ○ 체결일자 : 2012.10.24. ○ 체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복지지원, 장학사업, 수산업 지원, 환경보전, 전략사업 지원, 건설지원(8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주)가 체결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이행협약」의 세부이행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 발생, ○ 서천군은 협약서를 적극해석하나, 한국중부발전(주)는 소극적 해석함으로써 지원규모 및 방안 등에서 차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주)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서천군 투자유치 과장-한국중부발전 신서천 화력 건설 실장)를 지속적으로 운영(30여 차례)함 ○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었으나, 일부(전략사업 지원 등)에서 입장차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 '16. 4. 4. : 신서천화력 건설 관련 한국 중부발전-서천군 세부이행 계획에 따른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 보상 및 비인만 일대 어업권(한정 면허의 일반면허 전환)에 관한 문제 등은 실정법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 서천군과 어민단체, 중부발전이 협의하여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

□ 청양군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청양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호 : (주)양지 ○ 대표자 : 박찬석 ○ 위 치 :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산8-1번지 일원 ○ 업 종 : 폐기물최종 처분업 (사업장일반 폐기물매립장) ○ 면 적 : 34,500㎡ ○ 용 량 : 1,056,196㎡ ○ 사용기간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최종처리업 설치 반대 ○ 기존의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소송 진행 중) ○ 건설폐기물 허가 취소건은 충남도 특별위원회 활동 중 ○ 2016. 4. 7. : 행정소송(2심) 청양군 승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대법원 상고 예상 → 석면 위해성 자료 및 타지역 승소사례 연구 등 자료 확보 적극 대처

□ 홍성군

갈등명	사업개요	갈등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홍성고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위 치 : 홍성읍 충서로 1575번길 10 - 규 모 : 부지면적 53,544㎡ 건물면적 14,718㎡ - 이전 개교식 : 2016.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고등학교의 내포신도시 이전개교에 따른 기존 부지 및 건축물의 활용관련 갈등 ○ 홍성고 부지 공동화 방지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도 교육청과 각급 기관·단체와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있으며 홍성여고 동문회에서는 학생안전 등 문제로 인해 홍성고 부지로 이전 주장 ○ 일각에서는 홍주성 복원사업과 연계, 홍주초등학교를 홍성여고 등 학교와 함께 이전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고 부지 활용 연구 용역 등을 통한 활용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 검토, 홍주성 복원사업, 주변 상권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계획수립 예정

□ 예산군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등 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p>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 노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가칭) 서부내륙고속도로 ○ 위치 : 평택-익산간 ○ 사업비 : 2조 7,000억원 ○ 사업기간: 2018~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 노선안을 놓고 민-민 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2. 24 : 민간사업제안서 제출(포스코건설⇒국토부) ○ 2014. 3. 28 : 민간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검토 의견 제출(대흥면 봉수산 너머 서측으로 변경) ○ 2014. 4. 9 : 국토교통부 방문 예산군 의견 전달(부군수 외 2명) ○ 2014. 10. 17 :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 변경 측구에 관한 건의 ○ 2014. 11. 13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과 ○ 2014. 12. 30 : 제3자 제안공고 ○ 2015. 1. 19 : 주민설명회(포스코, 예산문화원) ○ 2015. 2. 5 : 제3자 제안공고에 의한 의견 요청(포스코⇒군) ○ 2015. 2. 26 : 제3자 제안공고 의견 회신(군⇒포스코) ○ 2015. 3. 30 : 제3자 제안공고 제안서 제출(포스코⇒국토교통부) ○ 2015. 5. 6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국토교통부⇒포스코) ○ 2015. 5. 13 : 대책회의(주민,국토교통부,포스코,충남도,예산군) ○ 2015. 6. 11 : 갈등조정협의 구성을 위한 간담회(충남도, 주민 예산군 대흥면) ○ 2015. 9. 9. ~ 현재 : 갈등조정협의 구성 및 개최(1차~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4. : 갈등조정 협의회 문제해결 ○ 2016. 6. : 실시협약 체결 ○ 2016. 7. ~ :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한 갈등해소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 태안군

갈 등 명	사업 개요	갈등 내용	진행 경과	향후 전망
<p style="text-align: center;">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위치/면적: 안면읍 승안·중장신야리 일원 / 2,993km² - 사업비/기간 : 1조474억원 (공공 1,410, 민자 9,064) / 2020년 - 도입시설 : 호텔,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년도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사업 지정 후 충남도 직접개발, 공영개발, 민간 투자 개발 등 모색해왔으나 난항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 중 개발 가시화를 믿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지역주민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실감 폭발 ○ '06년 공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15. 1. 12. 사업 포기하여 '15. 1. 23.부로 협상 지원 상실됨에 따라 ○ 주민들의 기대도 무너져 국정, 도정 및 군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 안면도 방문 주민과 간담회(15. 2. 17) 이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발추진 천명하고 안면도관광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을 제안 ○ 15. 3. 16. 안면도관광개발 추진협의회(27명, 도2, 도의회2, 군2, 군의회2, 주민대표12, 환경단체1, 지역언론1, 전문가5)를 구성 ○ 5차에 걸쳐 추진협의체 협의 등 민관이 합심하여 안면도관광지개발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지구 사법역사문화교육관 건립 '18년까지 준공 예정 ○ 3지구 공모 결과 롯데자산개발(주)에서 바다와 태양을 담은 나만의 휴양공간이라는 개발 콘셉트로 제안서 제출하여 현재 도에서 평가 중에 있어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기대 ○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1, 4지구는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과 대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행정을 추진한다면 새로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앞으로 투자방식 추진 방법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민과 함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추진을 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자료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회장 및 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 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회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 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갈등 진단)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공갈등진단” 이라 함은 공공정책 결정 이전에 정책을 사전 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관리방법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갈등진단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할 때 공공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정책 수립·추진 부서(이하 “실무 부서” 라 한다)에서 갈등관리담당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의 실·과·담당관
2.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3조(진단방법 등) ① 실무부서는 제2조에 따라 공공갈등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해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
2.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 해당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계획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
3. 그 밖의 경우 :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발생한 시점

-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서 제출한 공공갈등기술서는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 또는 조례 제18조에서 지정한 갈등전문기구의 의견을 들어 갈등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실무부서는 공공갈등기술서를 제출하여 제3항에 따라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4조(교육훈련) 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공공갈등 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갈등 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관리 교육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갈등관리 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규정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며, 갈등조정협의회의
명칭은 갈등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한다.

1. 목적과 기능
2. 운영기간
3. 구성 및 참여자 준수사항
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6. 그 밖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한 사항

제7조(갈등관리실태 점검 등) ① 총괄부서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갈등
관리 대상을 점검하고,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공갈등 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실무부서에 공공갈등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갈등 기술서 (제3조 관련)

사 업 명 :

(작성일 :)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비 :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추진계획

-

2. 갈등현황

○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
- 발생(예상)시기 :
- 표출방법 :
- 쟁점사항(요구사항)
 - 지역주민(사회단체) :
 - 행정기관 :
 - 사 업 자 :
- 언론보도 등 :
 - ※ 언론 보도된 경우 보도내용과 대응내용 기록

○ 갈등대응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내용기록

- 대응실적 :
- 대응경과 :
- 실무부서 의견 :

○ 갈등해결

- 해결방안 :
- 소요기간 :
- 소요비용 :
- 협조부서(기관) :

※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해결방안을 추정하여 내용기록

○○ 갈등관리 계획서 (제3조 관련)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과 장:	
	팀 장:	
	담당자:	

1 사업현황

추진근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 도비 : , 시·군비 :)

추진경과

○

향후 추진일정

○

2 갈등개요 및 해결계획

갈등 개요

○ 발생(예상)시기 :

○ 표출형태 :

○ 갈등 당사자 :

○ 갈등진단일 및 결과 :

이해관계자 입장

(예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시·군 지역주민		
충청남도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사회단체		

※ 이해관계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되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추정하여 기록

갈등 진행경과

○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내용기록

갈등 대응계획

① 갈등 쟁점사항

○

② 갈등 해결방안 :

○

< 작성 내용 >

- 갈등조정을 위한 갈등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기록
- 유관기관 및 부서, 도의회 협조 사항 등을 기록
- 갈등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해결시점(추정)을 기록
- 사업계획 등 수정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항을 기록

③ 향후 추진계획

○

※ **추가 제출자료**

1. 주요 갈등내용 및 처리결과(공문사본)
2. 갈등사안이 지역의 경우 위치도, 현황 사진 등

